



제426회국회(임시회)
제 1 차 교 육 위 원 회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, 주택임차료 등을 명시 〉

■ 이재정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8078호)

2025. 6.

교 육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천우정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※ 참고	6
참고 1 . 학자금대출 제도	6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이재정 의원 등 12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2. 12.
3. 회부연월일 : 2025. 2. 1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‘학자금’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·교재구입비·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.

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,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호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,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호).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2. (생략) 3. “학자금”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<u>숙식비</u> ·교재구입비·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. 4. ~ 13. (생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 <u>숙식비(기숙사비,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 4. ~ 13. (현행과 같음)

현행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조제3호¹⁾에 따르면 학자금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“등록금”과 숙식비·교재구입비·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“생활비”로 정의하면서, 동법 제10조제1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

1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**학자금**”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·교재구입비·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.

제10조(대출 종류 및 한도)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.

나누어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동법 제10조제3항²⁾은 생활비대출의 한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2024년 기준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생활비대출 한도는 학기 당 200만원씩 연간 최대 400만원³⁾임.

개정안은 저조한 기숙사 수용률⁴⁾과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주택 가격 및 그에 따른 청년 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자금대출을 통해 대학생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.

다만, 개정안은 “숙식비”에 기숙사비 및 주택임차료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나, 현행 규정으로도 숙식비에 기숙사비 및 주택임차료 등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,

등록금으로만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금대출과 달리 생활비대출의 경우 사용처에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 규정에 따른 생활비대출을 통한 주거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법 개정애 따른 실익

2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

제10조(대출 종류 및 한도)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3) 참고1. 학자금대출 제도

4)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수는 총 1,561,661명인 데에 비해 기숙사 수용가능인원은 364,794명에 불과하여 기숙사 수용률은 23.4%에 불과하며 이는 전년 대비 0.1%p 감소한 수치임. 전문대학 기숙사 수용률의 경우 18.0%로 전년 대비 0.7%p 감소하여 4년제 대학에 비해 더욱 저조한 상황임.

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⁵⁾.

참고로, 2025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이 큰 기초·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“주거안정장학금”⁶⁾ 지원 사업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교육부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

5) 참고로,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실행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의 범위가 “등록금과 숙식비·교재구입비·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”로 규정되어 있어, 마찬가지로 생활비 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임.

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학자금 지원의 범위)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·교재구입비·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. 다만,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6) ※ (한국장학재단) 주거안정장학금 개요

○ 지원자격
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-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-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-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-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
○ 지원내용

-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

※ 단, 방학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

-지원범위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
(주거 관련 비용) 임차료*(전·월세, 보증금** 등), 주거 유지·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 관리비 등), 수도·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, 주택임차·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
※단,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

* **임차료**는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
** **보증금의 경우**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 4%)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

감하면서,

현재 대학생들에게 1.7%의 저금리로 학자금 생활비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비를 포함한 숙식비, 교재구입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또한 학자금 숙식비 범위에 기숙사비, 주택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문 의 처
02) 6788-5193

□ 참고1. 학자금대출 제도

구분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	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정의	대학생에게 학자금(등록금 및 생활비)을 대출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	대학생에게 학자금(등록금 및 생활비)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, 학생이 취업 후 상환 기준소득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
대상	·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,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(외국대학 제외)	·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 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(학점인정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
연령	공 통 · 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	학 부 · 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 대 학 원 · 만 40세 이하
신청 대상	성 적 기 준 학 부 · 신입생 : 제한 없음 · 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 학 원 · 신입생(신규학습자) : 제한 없음 · 재학생(계속학습자) 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	학 부 · 신입생 : 제한 없음 · 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 학 원 · 제한 없음
소 득 기 준	공 통 ·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	학 부 · 등록금: 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· 생활비: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(보호 아동 포함)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 학 원 ·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
신용 요건	공 통 ·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	공 통 · 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
대출금리	· 고정 금리(연 1.70%)	· 변동금리(연 1.70%)
대출조건	학 부 ·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(전문대학 포함) 4천만원 5,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·치의·한의계열 9천만원 · 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	학 부 ·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(한도 없음) · 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
	대 학 원 ·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 과정 일반·특수/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 과정* 일반·특수 9천만원 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 1억2천만원 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 · 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	대 학 원 ·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 과정 일반·특수/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 과정* 일반·특수 9천만원 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 1억2천만원 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 · 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
	학 점 은 행 제 · 학습비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학기당 200만원) ※ 대출금액 총 한도 : 4천만원 ※ 생활비대출 없음	
대출기간	학 부 대 학 원 · 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	·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('25년 기준 연소득 2,851만 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·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
	학 점 은 행 제 · 최장 18년(거치기간 8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	
상환방법	·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수수료 없음)	· 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※ 자발적 상환(재단) 가능(수수료 없음)